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운용	C1	C2	C3	C4	C5	A2	E	I	I2	C(P)	S
52104	31692	94174	94180	94284	94285	95081	95082	93642	19981	AD762	AR248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02-2071-9900)

4.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의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i.co.kr)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 **2014년 04월 08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04월 10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5,000억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자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Index 10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p>기본 운용 전략</p>	<p>전세계적으로 700조원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Allianz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과정, 자체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p> <p>또한, 시장상황 및 종목별 수익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 비율 조정 또는 투자 종목 수를 폭 넓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p> <p>※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5월 4일부터 KOSPI Index X 100%입니다. 상기의 변경 비교지수가 실제 투자 전략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으며, 2009년 5월 3일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200 Index X 87.5%) + (Call X 12.5%)입니다.</p> <p>※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 하였으나,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할 절차에 따라 변경 및 공시 될 예정입니다.</p>
<p>운용전략</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20px;"> <p>Model Portfolio 구성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수익가치 척도 (PER/PBR/PSR 등)상 저평가된 종목 및 높은 ROE ▶ 펀더멘털이 우량하거나 저평가된 종목 중 증권사 리서치가 뛰어난 종목 ▶ 견실한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 ▶ 매력적인 기업 가치 ▶ 우수한 경영진 ▶ 주주에게 우호적인 기업 정책 </div> <div> <p>Portfolio 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 수시 점검 ▶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종별 분산 최적화 견실한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 ▶ 세계증시 및 국내증시에서의 핵심테마 고려 ▶ 시장상황 및 업종별 수익전망에 근거한 적절한 비중조정 </div> </div>

세부 운용전략	<p>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했거나 시장이 간과하는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p> <p>(참고)</p> <p>*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p> <p>* PER(Price Earnings Ratio) PER 은 현재주가를 주당이익(EPS)으로 나눈 것으로 이 지표는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즉, 기업의 단위당 수익력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당이익이 3000 원이고, 현재의 주가는 30000 원이라면 PER 는 10 배수가 되는데 이는 1 원의 수익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10 배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뜻한다. PER 는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회계처리방법 등 질적인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그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p> <p>* PBR(Price Book-Value Ratio) PBR 은 주가를 주당순자산 즉, 자기자본의 주당장부가치(BPS=순자산/발행주식수)로 나눈 비율이다. 보통주의 가치를 시장가격(분자)과 장부가치(분모)를 대비하여 본 지표인 것이다. 즉, PBR=Market Price/BPS 가 된다. 이를 총액기준으로 M/B 비율이라고도 한다. PER 가 수익가치에 대비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에 PBR 은 자산가치에 대비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측정한 지표라는데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p> <p>* PSR(Price Sales Ratio) PSR 은 주가를 주당매출액 즉, SPS(Sales Per Share)로 나눈 비율이다. 즉, PSR = Market Price/SPS 가 된다. 또한, PSR 은 수학적으로 매출액 순이익률(margin)과 PER 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SR = \text{자기자본 시장가격/매출액}$ $= \text{자기자본 시장가격/순이익} \times \text{순이익/매출액}$ $= PER \times MARGINE$ 이는 비록 어떤 기업의 PER 가 지금은 낮지만 미래에 margin 이 늘어나는 성장 잠재력이 있을 때 PSR 이 낮은 주식은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p>
------------	--

2) 위험관리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실시하여,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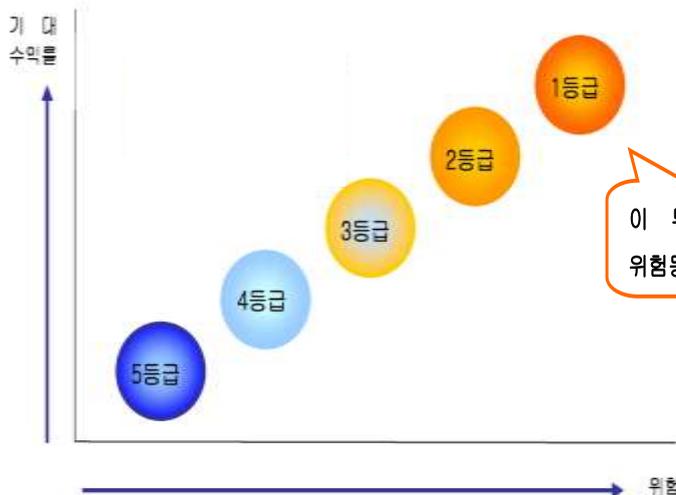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위험	<p>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 및 종목별 수익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 비율 조정 또는 투자 종목 수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주식종목에 집중투자 하는 경우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보다 개별 종목 변동성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주식가격 변동위험	<p>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위험	<p>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펀드규모위험	<p>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운용프로세스 위험	<p>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p>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및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p>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 채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의무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의무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p>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알리안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당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14.03.31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 순자산규모	
김유경 (책임운용전문인력)	68년생	이사	8개	2,937억	University of Hartford 1996.6~2006.03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2007.08~ 현재 당사 주식운용팀 이사
정유진 (부책임용전문인력)	80년생	운용역	8개	2,937억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 2006.07~2009.10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 2009.10~2010.12 IBK자산운용 애널리스트 2011.01 ~ 현재 당사 주식운용팀 운용역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해당 사항 없음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2014년 03월 31일 기준)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4년(%)	최근5년(%)
		2013/04/01~ 2014/03/31	2012/04/01~ 2013/03/31	2011/04/01~ 2012/03/31	2010/04/01~ 2011/03/31	2009/04/01~ 2010/03/31
Class A2	2009.08.12	-0.50	-5.17	-12.15	33.54	-
비교지수	2009.08.12	-0.96	-0.45	-4.40	24.45	-
Class E	2009.08.19	-0.77	-5.44	-12.42	33.06	-
비교지수	2009.08.19	-0.96	-0.45	-4.40	24.45	-
Class C3	2010.10.18	-1.04	-5.70	-12.61	-	-
비교지수	2010.10.18	-0.96	-0.45	-4.40	-	-

Class C4	2010.10.18	-0.91	-5.57	-13.20	-	-
비교지수	2010.10.18	-0.96	-0.45	-10.84	-	-
Class C5	2010.10.18	-0.79	-5.46	-12.41	-	-
비교지수	2010.10.18	-0.96	-0.45	-4.40	-	-
Class A2	2009.08.12	-0.50	-5.17	-12.15	33.54	-
비교지수	2009.08.12	-0.96	-0.45	-4.40	24.45	-

주1) KOSPI Index 100%(최초설정일~ 2009.05.03: KOSPI200 Index 87.5% + Call 12.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별 (Class)	가입자격	수수료(%)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C1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없음	없음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C2	Class C1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C3	Class C2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C4	Class C3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C5	Class C4 수익증권 보유1년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A2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없음	1% 이내	없음		없음
E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해 가입	없음	없음		없음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I2	(1)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국가 재정법에 의한 기금 (2)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없음	없음		없음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없음	없음	없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후취판매수수료 부과)	없음	3년 이내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 선취/후취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C1	C2	C3	C4	C5	A2	E	I	I2	C(P)	S	
집합투자업자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매3 개월
판매회사	1.500	1.375	1.250	1.125	1.00	0.700	0.980	0.000	0.050	0.850	0.35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보수합계	2.190	2.065	1.940	1.815	1.690	1.390	1.670	0.690	0.740	1.540	1.040	

기타비용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발생시
총보수·비용	2.192	2.067	1.942	1.817	1.692	1.392	1.672	0.692	0.742	1.542	1.042	매3 개월
합성 총보수· 비용비율	2.203	2.078	1.953	1.828	1.703	1.403	1.683	0.703	0.753	1.553	1.053	
증권거래비용	0.240	0.240	0.252	0.246	0.239	0.243	0.237	0.240	0.240	0.240	0.240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3.3.3~2014.3.2)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3.3.3~2014.3.2)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미설정 클래스는 Class C1 의 비용을 적용하여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용비율, 증권거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C1 수익증권	-	231	672	1,081	2,183
Class A2 수익증권	99	246	553	882	1,813
Class E 수익증권	-	177	547	943	2,048
Class I 수익증권	-	74	231	402	897
Class I2 수익증권	-	79	247	430	959
Class C(P) 수익증권	-	163	506	872	1,901
Class S 수익증권	-	111	345	598	1,321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3) 종류별(Class C1와 Class A2)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4) Class A2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는 판매수수료를 1%로 가정하였으나, 판매사별 수수료 차등화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ass S는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i.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구분	15시[오후 3시]이전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	납입일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이 투자신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내에서 청약이 권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1933년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정 S의 규칙 902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로 이전될 수도 없으며 또한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자들은 가입신청자들 본인이 미국인이 아님을 선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자들은 미국인의 계좌를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의 계좌를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인들에게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취득하는 것도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③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단위:원)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14.03.02	2013.03.02	2012.03.02
운용자산	4,795,456,334	6,409,376,620	8,672,629,386
유가증권	4,792,587,974	6,405,365,487	8,670,644,138
현금 및 예치금	868,360	4,011,133	1,985,248
기타 운용자산	2,000,000	0	0
기타자산	2,515	7,592	25,125,170
자산총계	4,795,458,849	6,409,384,212	8,697,754,556
기타부채	26	1,100,000	303,803,403
부채총계	26	1,100,000	303,803,403
원본	5,259,520,508	7,054,164,470	8,393,951,153
이익조정금	-464,061,685	-645,880,258	0
자본총계	4,795,458,823	6,408,284,212	8,393,951,153
손익계산서(단위:원)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2013.03.03 - 2014.03.02	2012.03.03 - 2013.03.02	2011.03.03 - 2012.03.02
운용수익	-26,670,425	-804,108,888	735,186,695
이자수익	71,813	228,241	1,929,233
배당수익	0	0	8,815,804
매매/평가차익(손)	-26,772,965	-804,567,923	723,866,735
기타수익	30,727	230,794	574,923
운용비용	132	1,101,402	1,115,511
매매수수료	132	1,402	15,511
기타비용	0	1,100,000	1,100,000
당기순이익	-26,670,557	-805,210,290	734,071,184

